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목 편성) ① 교과목 편성은 수업시간 단위를 고려하여 교시별로 골고루 배정하며, 교학처에서 각 학부 및 학과에 배정한 교양·통합전공교과목 시간대를 제외하고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

② 매 학기 교과목 편성 과목 수는 재학생수를 고려하여 강좌수를 정하며, 학과 또는 전공당 15~18학점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성된 교과목은 매 학기 소정기간 중에 교양교과목은 교학처에서, 통합전공교과목은 해당 학부에서, 그리고 전공교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개설하며,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3.1.>

제3조(교과목 신설 및 변경) ① 신규 교과목 개설은 해당 학과 및 학부에서 「교과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학과 회의록 포함)하며, 이를 교학처장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② 교과목 변경(교과목명 변경, 학점 변경 등)은 해당 학과 및 학부에서 「교과목변경신청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③ 교내 관련부서에서 신규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 및 학부와 협의한 후, 관련 서류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4.3.1.>

제4조(수업시간) ① 수업시간의 단위는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② 전임교원에게는 연강을 불허하며,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실험·실습, 체육실기 및 연기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③ 수업시간은 지정된 시간대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업시간대 이외의 수업을 할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5조(강의실 배정) ① 강의실은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 및 학부에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험실·실습실 등은 해당 학과 및 학부에서 관리한다.

② 강의실은 학과 및 학부별로 개설 강좌수를 고려하여 배정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일반강의실, 종합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을 배정한다.

제6조(분반 및 폐강) ① (분반) 수강생 수가 이론 교과목은 40명 이상, 실험·실습·체육 및 연기실기 교과목은 30명 이상, 그리고 외국어 회화 교과목은 30명 이상일 경우 해당 학과 및 학부의 요청에 의해 분반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

② (폐강) 수강생 수가 전공교과목 및 교양교과목은 10명 미만, 계절수업 교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한다. 단, 강좌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졸업 직전학기의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10명 이하로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3.1.>

제7조(휴강 및 보강) 교수 및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사전에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7.1., 2014.3.1.>

제8조(전임교수의 강의배정) 전임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3일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학사 과정 강의에 6시간 이상을 우선 배정한다.

제9조(속강제한) 3시간 이상의 강의는 분리하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효과와 교과목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전임교원 책임시수)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 단, 정년 전 6학기에 한하여 주당 책임시간을 9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촉한 전임교수의 책임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강의시간 배정) ① 전임교수는 주당 12시간 이상으로 배정하되, 16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겸임교원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③ 초빙교원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④ 명예교수는 주당 3시간으로 한다.

⑤ 객원교수는 주당 4시간으로 한다.

⑥ 강의교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⑦ 외국인 교·강사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실험실습시간수) ① 실습교과목은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편성하고, 2학점은 3시간, 3학점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시간수는 특수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실습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 실습교과목은 ○○실험·○○실습 또는 ○○연기·○○연습 등으로 교과목 명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강의시간표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3.1.>

제14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수강신청 개시 전 소정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